

[별표 4의2]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73조의2제4항 관련)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존속기한: 2022년 7월 31일)

총계	9
일반직 계	9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내 옛 전남도청 건물의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202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저작권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진 영

●대통령령 제3005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1호 중 “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다)”를 “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제10조의2제3항제5호 중 “관리”를 “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1호 중 “운용”을 “운용(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41조제1항 관련)

1. 고용노동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통합고용정책국 1개 과	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유해화학물질 관리(지방고용노동관서)	9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10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3)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452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3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5)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4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6)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99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7)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4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직업능력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통합고용정책국 및 노동정책실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54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9조 중 “25명”을 “33명”으로, “6급 10명, 7급 11명”을 “6급 11명, 7급 18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486”을 “504”로 하고, 특정직 계 “394”를 “412”로 하며, 경호서기관 “45”를 “47”로, 경호사무관 “123”을 “130”으로, 경호주사 “79”를 “84”로, 경호주사보 “34”를 “38”로 한다.